

#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13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, 여성, 직장인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, 활동범위도 사회복지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
-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함(제1조, 제2조)
-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, 기능, 조직구성, 자원봉사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의 활동기반을 구축하도록 함(제4조 내지 제7조)
- 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제8조)
-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함(제9조, 제10조)

-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자원봉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제11조 내지 제16조)

**3. 의안전문 : 바로 볼임**

**4. 관계법령 발췌 : 바로 볼임**

##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(이하 "자원봉사활동"이라 한다)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지방자치의 정착·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
2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활동
3. 자원봉사 교육 및 상담
4. 방범활동·교통 및 기초질서제도
5. 재해·재난관리 및 구조 지원
6. 문화·관광·예술·체육활동에 관한 봉사활동
7.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

제3조 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도민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### 제2장 종합자원봉사센터

제4조 (설치)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5조 (기능)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·배치 및 교육

2.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3. 자원봉사단체, 기업,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
4.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지원
5.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

**제6조 (조직구성)** ①센터에는 소장 1인, 사무국장 1인, 운영부장 1인, 운영요원 및 행정요원 약간명을 둔다.  
 ②센터에 두는 인원의 선발방법, 임기, 보수,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7조 (자원봉사자 등록 등)** ①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.  
 ②센터의 소장은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 
 ③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 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경비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정산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  
 ④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
2.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
3.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·제출한 경우

**제8조 (센터의 지원·위탁운영)** ①도지사는 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 
 ②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 
 ③도지사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,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**제9조** 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 ①센터소장은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 ②센터소장은 매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 ③센터소장은 수입·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이를 2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** (지도·감독)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·회계 및 비품관리 등 제반 사항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자원봉사위원회

**제11조** (설치)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자원봉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**제12조**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센터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
2.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개발·조정 및 협의
3. 중·장기 자원봉사 정책방향의 설정
4. 자원봉사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

**제13조** (구성·운영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.

- ②위원은 자원봉사관련 단체 대표자, 유관기관 관계자 등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-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- 제14조 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-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·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.

제15조 (수당과 여비)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5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지방재정법

**제14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**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 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 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  4.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(생략)

### □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

**제4조(보조 대상)**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